

# 공산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

제품안전과 전기사무관 박윤수 02)509-7412 parkys@ats.go.kr

#### 1. 전기용품

□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기준 UPD 체제로 개편한 참고적용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국제규격 체제 전환에 다른 전기용품의 기술개발 및 무역촉진을 도모하고 전기기기용 스위치 등 분류품목 및 전자파적합성(BNC) 안 전기준의 선택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국제규격 체제전환에 다른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안 전기준운용요령을 계정하여 2002.3.29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#### □ 동 운용요령을 주요 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참고적용 안전기준 추가 [ 별표 2 ] : 5개 기준
  - 분리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0558-2-1)
  - 절현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4)
  - 안전절현변암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6)
  - 자동변압기(단권변압기)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13)
  - 의료장소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15)
- 국제규격(IEC)과 일치화시킨 안전기준의 선택 적용시기 현장
  - 전기기기용스위치, 교류용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,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, 절연변압기 (4 개 분류품목) : 현행(2002.630) → 개정(2003.630)
  - 전선 및 전원코드, 전기용품보호용부품, 전통공구, 조명기기 (4개 분류품목) : 현행(2003.630) → 개정 (2004.630)
- 전자파적합성(EMS) 기준 선택 적용시기 현장
  - 국제기준(IEC)과 일치화시킨 전자파적합성(EMC), 전자파장해(EMI) 및 전자파내성(EMS) 안전기준 : 현행 (2008.630) → 개정(2004.630)

1 月会里受

### [ 붙임 ] 기술포준원 고시 제 2002-160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02 3. 29. 기술표준원장

###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점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2항의 [별표 2]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기준변호	제정일자		7[	준	명			IEC(CISPR)규격	최종개정일
K 61558-2-1	2002.3.29	선 <b>력용변</b> 압기,	천원 <del>공급</del> 장	치 및 이외	유사한	기기의	안	1997-02	
		전, 제2-1부분	리변압기의	개별 요구/	사항				
K 61558-2-4	2002.3.29	전 <b>력용변압</b> 기,	천원 <del>공급</del> 장	치 및 이외	유사한	기기의	안	1997-02	
		전, 제2·4부:절	연변압기의 .	개별 요구/	사항				
K 61558-2-6	2002.3.29	전력 <b>용</b> 변압기,	전원 <mark>공급</mark> 장	치 및 이외	유사한	기기의	안	1997-02	
		전, 제2·6부:안	전절연변압7	1의 개별 의	a구사항				
K 61558-2-13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	천원 <mark>공급</mark> 장	치 및 이외	·유사한	기기의	안	1999-10	
		전, 제2-13부:7	나동변합기(E	·권변압기)9	의 개별 .	<b>요구</b> 사형	}		
K 61,558-2-15	2002.3.29	전 <b>력용변</b> 압기,	전원공급장	치 및 이외	유사한	기기의	안	1999-02	
		전, 제2·15부:9	<mark>료장소용</mark> 절	<b>연변압</b> 기의	개별 요	-구사항			

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전기용품안전기준 선택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항의 제조구분별 ⑧01 내지 ⑧16 안전기준은 아래 기간까지 제2조제1항의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과 선택 적용한다.

분류품목	선택운용시기
1. 전선 및 전원코드	2004. 6. 30
2. 전기기기용 스위치	2003. 6. 30
3.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돼시터	2003. 6. 30
4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2003. 6. 30
5. 전기 <del>용품</del> 보 <del>호용 부품</del>	2004. 6. 30
6. 절연변압기	2003. 6. 30
8. 전통 <del>공구</del>	2004. 6. 30
11. 조명기기	2004. б. 30

③ (전자파격함성 기준 선택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제조구분별 ③00 내지 ③16 안전기준 및 부속서와 [별표 3]에서 정한 국제기준(IEC)과 일치화시킨 전자파격함성(EMC), 전자파장해(EMI) 및 전자파내성(EMS) 안전기준은 2004년6월30일까지 선택 적용하고, 2004년7월1일부터는 [별표3]을 적용한다.